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2142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송희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20.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12. 2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44,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8.(이후 2019. 12. 20.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12. 1.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12. 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2. 2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44,395,244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B의 아파트 매각 및 매매대금 내지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

1) B는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무렵인 2019. 10. 19. 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6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잔금을 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11. 11.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직 받지 아니한 매매잔금 1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월 차임 570,000원으로 정하여 2020. 2. 11.까지 임차인으로 거주하기로 하였다.

2) 그리고 B는 2019. 11.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매매잔금 겸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D으로부터 17,000,000원을 받아 2020. 1. 7.경 D에게 위 17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153,000,000원 채권 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고, 2020. 1. 30.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D으로부터 다시 52,125,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위 153,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추가 지급된 52,125,000원을 공제한 100,87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20.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이에 D은 2020. 7. 1. 이 법원 2020년 금 제2506호로 피공탁자를 B 또는 피고로 하여 99,87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B와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1) 피고는 1996년경 B와 혼인하였는데 2019. 10. 25.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약정을 하였다(아래 내용 중 '갑'은 B, '을'은 피고이다).

가. 갑 명의 이 사건 아파트는 갑과 을이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임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처분시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로 매매대금 중 2억 2천만 원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다. 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그 가수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며 그 권리는 갑이 가진다.

라. 갑은 을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2019. 11. 30. H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I아파트, J호를 임대차보증금 257,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2,000,000원은 피고가 직접, 나머지 23,000,000원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입회한 공인중개사인 K이 H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2020. 1. 28. L으로부터 20,000,000원, 같은 날부터 2020. 1. 29.까지 사이에 B의

여동생인 M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30. N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자금을 모아 2020. 1. 30. H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232,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 신고하였다.

3) 피고는 2020. 2. 10. B와의 협의이혼을 신고하여 이혼하였다.

라. B의 자력

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무렵 B가 소유하였던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밖에 없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O 주식회사(이하 'O보험'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를 B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B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말소 당시인 2019. 11. 11. 기준으로 O보험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314,289,020원이었다.

3) B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날인 2019. 11. 12. 기준으로 대출 내지 현금서비스 합계 49,701,000원 상당의 채무와 합계 294,141,000원의 보증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P, 주식회사 Q, O보험, R조합, S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B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채무자인 D으로부터 53,12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3,1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이혼하면서 그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이는 정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B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9. 12.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주식회사 T(이하 'T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있었던 2019. 11. 20.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인 2020. 1. 30. 비로소 성립한 것이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기준시는 협의이혼 신고시이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때가 2020. 2. 10.이므로 그 무렵에 존재하였던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조달 출처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T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 139,265,189원도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된 채무로서 재산분할할 때 고려되어야 할 소극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참조), T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가 B가 아닌 C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채무는 B가 경영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B와 피고의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모두 피고에게 재산분할하였고 그에 따라 B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은 전부 없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 양도는 B와 피고의 공동재산이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분배한 것인데, 그 매매대금이 640,000,000원이었던 점, 그 중 153,000,000원만을 피고에게 채권 양도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B와 피고가 이혼 과정에서 피고가 적극재산 전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재산분할이 과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분할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 재산분할 이후에도 어느 일방이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결과의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 일방이 채무 초과인 이유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소극재산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만한 다른 자료의 제출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별지

채권 목록

1. 소외 []와 제3채무자 소외 [] 사이의 “서울 양천구 [] 외1필지 [] 아파트 []호” 아파트대매계약에 의한 매매잔금지급채권 결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소외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양천구 [] 외1필지 [] 아파트 []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가 제3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 153,000,000원의 반환채권.
2. 피고 []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020년 7월 1일 공탁자 []이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 금제2506호로 공탁한 공탁금 및 이자의 각 출급청구 채권. 끝.